

# 안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 번	안 호	557
--------	--------	-----

제출년월일 : '96. 11. .

제 안 자 : 안 산 시 장

## 1. 개정이유

- 지방자치단체에서 정책적으로 세제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위하여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96. 4. 25일자로 감면조례개정안이 시달 되었기에
- 지방자치단체간 과세형평 및 대외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법 개정등으로 인한 자구수정이 불가피하여 이와 관련된 안산시시세감면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 ◎ 지금까지는

(농어촌주택개량등에 대한 재산세, 종합토지세 면제에 있어서)

-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건축물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한하여)에 대하여 5년간 면제해 주던 것을

### ○ 앞으로는

- "전용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까지 면제대상을 확대하여 주고

### ◎ 지금까지는

(영구임대주택용 부동산 감면에 있어서)

-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인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종합토지세, 소방공동시설세만 감면하여 주고 도시계획세는 경감규정이 없었으나

### ○ 앞으로는

-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인 부동산에 한하여 도시계획세도 면제하는 것으로 함.

### 3. 참고사항

- 근거법령
  - 지방세법 제9조 (과세면제등을 위한 조례)
  
- 예산상황 : 해당없음
  
- 영구임대주택 도시계획세 예상 감면액
  - 588세대 × 8,260원 = 4,856,880원
  - 선부동 1079번지 (군자주공 13단지)
  
- 기타사항
  - 경기도 세정13407-709('96.4.16)
  - 경기도 세정13400-786('96.4.25)

## 안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안산시시세감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본문중 "사업으로 인하여"를 "사업의 계획에 따라 주택개량 대상자로 선정된 자 (당해 사업계획에 의하여 사업시행자가 자력으로 주택을 개량하는 자로 지정한 대상자를 포함한다)로서"로 하고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을 "전용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인"으로 하며, 동조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농어촌정비법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
2.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
3.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정주생활권개발사업
4. 오지개발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오지개발사업

제11조 제1항 본문중 "그 부대복리시설을 포함한다)에"를 "당해 공동주택의 입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에"로 하고, 동조제 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중 과세기준일 현재 영구임대주택으로 사용하는 전용면적 40제곱미터이하인 공동주택 및 그 부속토지(당해 공동주택의 입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과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 관리비로 충당하는 복리시설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제21조를 제22조로 하고,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중복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함에 있어 2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29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시한) 이 조례는 1997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 (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수 정
<p>제10조(농어촌주택개량등에 대한 감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인하여 당해 지역에 거주하는자(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안에서는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입증되는자에 한한다) 및 그 가족이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건축물 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한하되, 시지역에서는 993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5년간 면제한다.</p> <p>1. 농어촌주택개량사업 및 취락구조개선사업계획에 의한 주택개량사업</p> <p>2. 농어촌정주권개발사업중 농어가주택정비사업 및 오지종합개발사업</p> <p>【 신 설 】</p> <p>【 신 설 】</p> <p>제11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①공공단체·주택건설사업자(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p>	<p>제10조(농어촌주택개량등에 대한 감면) -- ----- 사업의 계획에 따라 주택개량대상자로 선정된 자(당해 사업계획에 의하여 사업시행자가 자력으로 주택을 개량하는 자로 지정된 대상자를 포함한다)로서 -- ----- ----- 전용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인 ----- ----- ----- ----- ----- ----- ----- .</p> <p>1. 농어촌정비법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p> <p>2.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p> <p>3.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정주생활권개발사업</p> <p>4. 오지개발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오지개발사업</p> <p>제11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① ----- -----</p>



## 신 · 구조문 대비표

<p>【 신 설 】</p> <p>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제21조 (중복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함에 있어 2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29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p> <p>제22조(시행규칙) ----- -----</p>
--	--